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80호)

- '99. 7. 15.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6. 18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9. 6. 30
- 다. 상정일자 : '99. 7. 15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90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나, '95. 4. 1일 이후 운영사례가 없고, 감사시 특혜와 관련된 조례로 지적된 사항으로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환)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그간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중 일부업무를 시우회에 위탁·시행하여온 사항이 정부의 공무원상조회특혜금지시책과 관련 '94년 말로 종료되어, '95. 5. 1부터 굴착복구감독보조원 2인이 동일 업무를 '99. 6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 굴착복구감독보조원 운영실적은 (단위:건수)

구 분	계	'95	'96	'97	'98	'99. 6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건수	11.647	2.565	2.805	2.762	2.497	1.018

- 굴착복구감독보조원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배정받고 있음.
- 동 조례는 '95. 4. 1 이후부터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관련업무를 굴착복구감독보조원 2인이 수행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95년 4월 1일부터는 본 조례가 사문화된 규정인데 이때까지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답> 도로굴착 복구업무가 '99년 4월 30일 까지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시비를 교부받아, 시도와 구도의 구분이 없이 집행되어 조례를 폐지하지 못하였으나, '99년 5월부터는 "기금운영조례"등 제정으로 기존에는 서울시와 연계되어서 하던 것을 이제는 서초구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음.

질>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폐지하게된 사유와, 도로굴착 복구감독을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감리원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는데 서초구에서는 복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답> 조례폐지안 제출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서 올렸고, 그 동기는 이 조례에는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되어 시우회라는 특정기관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3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지안을 올렸으며, 도로굴착복구 감독사항의 문제는 '95년 6월 이후 2명이 하고있으나, 이제 복구기금운영은 시 도로는 시에서 하고, 구 도로는 구기금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모든 것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추진하겠으며, 예전과는 달리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여 좀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감독할 계획임.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